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 28 조제 4 항 관련)

1.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

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600 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 분의 1 인 경사면(이하 "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 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가공선 형태의 현수선・케이블・안테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나.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45 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은 제외한다.

다.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 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조물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1) 굴뚝・철탑・기둥 또는 그 밖에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2)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3)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4)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 천미터 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

2.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

가.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600 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은 제외한다.

나.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45 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그 높이가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구조물. 다만, 철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또는 가공선은 제외한다.

다.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 미터 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의 구조물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1). 굴뚝・철탑・기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支線)

2)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3) 가공선과 이를 지지하는 탑

4) 계류기구와 그에 부착된 지선

라. 주간에 고광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구조물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물